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Jae Lee(123peter@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불평등 |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 계층화 |

Abstract

This paper, in the situation of deepen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ims to find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main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income, market income and family income in the elderly and propose polic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ini coefficients of each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are total income's 0.4801, public income's 0.4071, market income's 0.6736 and family income's 0.1855.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serious in the total income, public income and market income areas. Second, after excepting for public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4864. after excepting for market income in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is 0.5784. When market and public income are excepted from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alleviate. Therefore, market income and public income are the major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But, family income alleviate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elderly. In order to alleviating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we must try to increasing the market income. For example, government must to supply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of low-income.

■ keyword: Inequality | Social Security System | Social Stratification | National Pension |

* 이 논문은 2014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4-0450)

접수일자 : 2016년 0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2월 23일

수정일자: 2016년 02월 15일 교신저자: 이용재, e-mail: 123peter@hanmail.net

1. 연구배경과 목적

인구 고령화로 2026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경희(2011)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 13.5%를 크게 웃돌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전체가구 평균소득 대비 노인 소득수준도 66.7%로 OECD 30개국중에서 하위 2위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은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와 부모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 부족,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으로 매우 복합적이다[1].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제도로는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수준까지 인하하기로 되어 있다. 공적제도 외에 가족 간의 사적이전, 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한 시장소득 등이 주요한노인소득원이 되고 있다. 미흡한 공적소득보장체계를시장, 가족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2][3]. 그러나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불안안 고용으로 괜찮은노인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가족소득과 시장소득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약화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을 심화시킬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노인소득원 중에서 비중이 높은 시장소득은 경제력 있는 노인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노인 간소득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적소득이 노인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할 경우 노인빈곤은 노인소득불평등이라는 더 큰 사회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크다. 실제로 엄소영·이용재(2015)의 연구에 따르면고소득층 노인의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이 높고, 가족소득은 저소득층이 높아서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이 오히려노인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 공적소득의 소득불평등 완화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득불평등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앞서공적소득 등 노인의 주요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계층에 소득과 자원을 재배분하여 자본주의가 초 래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4]. 국내 연구의 대부분도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 효 과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고 다수 연구가 보고하 고 있다[5]. 그러나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한 형태 로 변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화를 강화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노 인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가 오히려 노인 간 소득불 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Mashall(1963)과 Titmuss(1976)도 사회보장제도가 특정계층과 계급에 게 유리한 분배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 구 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6][7]. 국내연구에서 도 공적제도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8][9].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을 해소 하지 못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 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노인소득원이 노인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보장의 강화와 소득 불평등 약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1. 노후 소득보장의 불평등과 선행연구 분석

Esping-Andersen(1990)은 복지체제(Welfare regime)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복지제공이 국가, 시장, 가족의상호결합과 의존을 통해서 배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 소득보장의 원천도 국가와 시장, 가족을 주요 주체로 분류할 수 있다[3][10].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소득보장의 핵심으로 노후소득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모델이 깊이 논의·시도되고 있다. World Bank(1994)는 시장과 민영화를 강조하는 확정기여 적립방식연금을 제안하고 있으며, ILO/ISSA는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을 혼합한 4층 체계 또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제안하고 있다[11].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다층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제 도들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소득불평등 완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들 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계층에 소득과 자원을 재배분 하여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입장 을 견지해왔다[4][12]. 그 근거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가 노동자와 자본가 등 사회집단 또는 계급간의 이익의 분배에 대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익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과 계급갈등의 완화기능을 유지 하는 쪽으로 제도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시 되고 있다[13][14]. 같은 관점에서 국내 연구의 대부분 도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 통해 불평등을 완 화하고 있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 주고 있다[5][15].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변화·발전되고 있으며, 때때로 사회 불 평등을 강화하는 불평등 구조로 설계되어 오히려 사회 계층간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화를 강화 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사회보 장제도가 근본취지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 이다.

시민권(Citizenship)을 개념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념화한 Mashall(1963)과 Titmuss(1976)도 사회보장 제도가 특정계층과 계급에게 유리한 분배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오히려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7].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형태속에는 일반 대중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차별화 기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며, 오히려 계급구조와 사회적 서열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실증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소득계층을 포함한 직업·고용상태·직업·지역·

세대·성별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화 영역 내에 존재하는 분절화된 구조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속출함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사회계층화 효과를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한다[13][15]. 국내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에한정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전통적인 연구결과와는 다른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7][9][17].

이상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볼 때, '사회보장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전통적인 선량한 입장에서 변화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불평등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차별화 속성을 내부에보유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 외에도 시장소득과 가족소득의 불평등 구조에 영향도 분석이 필요하다. 공적제도가 성숙한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이 늦어 노인소득의 대부분을 시장소득과 가족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3]. 즉,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소득보장제도, 가족 간의 사적이전, 노인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의 영역에서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형태로 유발되고 있으며 그 결과인 전체 소득불평등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소득구조를 미루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관련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증연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 빈곤감소효과를 넘어서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손병돈(2009)과 이원진(2012)등 연구에서는 노인 총소득은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9]. 반면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 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한편, 노인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었 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서 미치는 불평등 개선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모형

연구자료는 201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얻어 진 2차 자료로 노인생활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나에서 확인한 노인의 소득자료를 엄소영·이용재(2015)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공적(국가)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전체소득으로 분류하고 전체소득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불평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소득의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분석모형[3][10]

2. 주요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노인 소득원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소득,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소득으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기초노령연금, 국가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가제도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포함하였고 시장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개인들의 시장활동에 의한 수입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족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이상의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과 기타소득의 전체를 전체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소득원이 노인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전체소득에 의거하여 노인을 소득10분위로 구분하고 각각 노인 소득원이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인구집단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산출을통하여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고소득 노인 혹은 저소득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지니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소득원이 노인전체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표 1. 노인소득원 구성

| 소득 | 내 용 |
|------|---|
| 공적소득 | ·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 기타공적급여(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기초노령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 |
| 시장소득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개인연금, 퇴직연 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 가족소득 | · 사적이전소득 |
| 전체소득 | · 국가소득+시장소득+가족소득+기타소득 |

¹⁾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실태조사 표본 10,000여명 추출하여 16 개 시·도, 동부/읍·면부별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할당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Ⅳ. 연구결과

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구조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득구조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표 2]와 같이 성별. 취업여부. 연령. 결혼상태. 학력수준에 따라서 전체소득,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거 주 지역에 따라서도 시장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 공적 소득, 가족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 시장 소득, 전체소득은 남성노인이 크게 높은 반면 가족소득 은 여성노인이 많았다. 각종연금과 소득활동은 남성노 인이 많이 하는 반면 가족 간 사적이전은 주로 여성노 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 라서는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하여 공적소득, 시장소 득, 가족소득, 전체소득 모두 높아서 도시화가 높은 지 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공적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1)

| 성별 | | N | 평균 | t/F값 |
|-----------|------|------|---------|------------|
| 공적소득 | 남자 | 4282 | 522.144 | 29.14*** |
| 등식소득 | 여자 | 6169 | 187.752 | 29.14 |
| 시장소득 | 남자 | 4282 | 618.869 | 25.351*** |
| 시경소국 | 여자 | 6169 | 162.337 | 20.331 |
| 가족소득 | 남자 | 4282 | 183.61 | -13.57*** |
| / 기속소속 | 여자 | 6169 | 255.53 | -13.57 |
| 전체소득 | 남자 | 4282 | 1337.84 | 33.017*** |
| 전세조국 | 여자 | 6169 | 613.79 | 33.017 |
| 거주 | 지역 | N | 평균 | t/F값 |
| 공적소득 | 동 | 7005 | 358.118 | 8.13*** |
| 등객소득 | 읍/면 | 3446 | 256.949 | 0.13 |
| 시장소득 | 동 | 7005 | 356.337 | 1.086 |
| 시경소국 | 읍/면 | 3446 | 335.262 | 1.000 |
|) 가족소득 | 동 | 7005 | 229.95 | 2.109* |
| 八十二二 | 읍/면 | 3446 | 218.16 | 2.109 |
| 전체소득 | 동 | 7005 | 954.49 | 5.548*** |
| 건세꼬극 | 읍/면 | 3446 | 820.93 | 5.546 |
| | 취업여부 | N | 평균 | t/F값 |
| 공적소득 | 예, | 3299 | 260.229 | -7.489*** |
| 등객소득 | 아니요 | 7152 | 354.526 | -7.409 |
| 시장소득 | 예, | 3299 | 791.611 | 34.768*** |
| 시성소국 | 아니요 | 7152 | 145.404 | 34.708 |
| 가족소득 | 예, | 3299 | 164.15 | -16.192*** |
| 기국소국 | 아니요 | 7152 | 254.62 | -10.192 |
| 전체소득 | 예, | 3299 | 1223.05 | 19.056*** |
| - 전세소국 | 아니요 | 7152 | 766.25 | 13.030 |

업한 경우에 시장소득, 전체소득은 높은 반면에 공적소 득과 가족소득은 적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취업은 저 소득층 노인들의 생계형 취업이 많아서 전체소득의 대 부분을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충당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연금 등 공적지원만으로 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취업활동에 적극 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소득, 시 장소득, 전체소득은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연령이 높을 수록 많았다. 공적제도가 마련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저 연령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 제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고 연령 노인 에게 가족 간 사적이전이 많았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 는 전체소득은 유배우자인 경우에 사별이나 이혼한 경 우 보다 많았는데, 공적소득과 시장소득도 유배우자인 경우에 대체로 많았다. 반면에 가족소득은 유배우자보 다는 사별, 별거한 노인이 많았다. 일반적인 결혼상태의 노인이 공적제도에 많이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장에서 경제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사별이나 별거상태의 노인의 경우 자녀 등 가족지원소 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소득과 공적소득, 시장소득은 학 력수준이 높을수록 월등히 소득이 높은 반면에 가족소 득은 학력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 인들의 경우 공적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취 업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학 력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가족 간 사적이전에 의한 소 득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2)

| | 연령 | N | 평균 | t/F값 | 사후검증 Scheffe |
|----------|--------|-------|---------|---------|-----------------|
| | 65-69 | 2804 | 400.08 | | 1>2 |
| 7.51 | 71-74 | 3158 | 329.794 | 00040 | 1>3 |
| 공적 소득 | 75-79 | 2500 | 258.447 | 26.942 | 1>4 |
| 소득 | 80세 이상 | 1989 | 293.933 | | 2<1 2>3 |
| | 합계 | 10451 | 324.759 | | |
| | 65-69 | 2804 | 588.965 | | 1>2 |
| | 71-74 | 3158 | 366.201 | | 1>3 |
| 시장 | 75-79 | 2500 | 225.31 | 113.418 | 1>4 |
| 소득 | 80세 이상 | 1989 | 140.905 | *** | 2<1 |
| | 합계 | 10451 | 349.388 | | 2>3 2>4 |

| | | | I | I | 0. 4 | |
|--------------|------------------|-------------|--------------------|----------------|--|--|
| | 05.00 | 0004 | 170.10 | | 3>4 | |
| 가족 (소득) | 65-69 | 2804 | 176.43 | 1 | 1>2 1>3 | |
| | 71-74 | 3158 | 210.96 | 72.71 | 1>4 | |
| | 75-79 | 2500 | 265.26 | *** | 2<1 | |
| | 80세 이상 | 1989 | 270.75 | <u> </u> | 2>3 | |
| | 합계 | 10451 | 226.06 | | 2>4 | |
| | 65–69 | 2804 | 1182.51 | | 1>2 | |
| 저너무비 | 71-74 | 3158 | 914.94 | 07 500 | 1>3 1>4 | |
| 전체 소득 | 75-79 | 2500 | 755.13 | 87.529 *** | 2<1 | |
| | 80세 이상 | 1989 | 714.99 | | 2>3 | |
| | 합계 | 10451 | 910.45 | | 2>4 | |
| | 결혼상태 | Ν | 평균 | t/F값 | 사후검증 Scheffe | |
| | 미혼 | 40 | 596.8 | | | |
| | 유배우(기혼) | 6476 | 359.293 | | | |
| 고저 | 사별(기혼) | 3568 | 260.664 | 14 270 | 미혼>사별 | |
| 공적 소득 | 이혼(기혼) | 277 | 297.841 | 14.379 | 유배우>사별 | |
| | 별거(기혼) | 87 | 350.103 | | 사별<미혼 | |
| | 기타 | 3 | 133.333 | | | |
| | 합계 | 10451 | 324.759 | | | |
| | 미혼 | 40 | 91.625 | | | |
| | 유배우(기혼) | 6476 | 445.821 | | | |
| 시장 | 사별(기혼) | 3568 | 179.972 | 38.9 | | |
| 소득 | 이혼(기혼) | 277 | 316.072 | *** | 유배우>사별 | |
| - ' | 별거(기혼) | 87 | 328.782 | | | |
| | 기타 | 3 | 786.667 | | | |
| | 합계 | 10451 | 349.388 | | | |
| | 미혼 | 40 | 21.08 | | 미혼<유배우 미혼<사별 | |
| | 유배우(기혼) | 6476 | 187.91 | | 미혼<별거 유배우<사별 유배우<별거 사별>미혼 사별>유배우 | |
| əl 조 | 사별(기혼) | 3568 | 301.43 | 00.704 | | |
| 가족 소득 | 이혼(기혼) | 277 | 144.69 | 98.784 | | |
| | 별거(기혼) | 87 | 326.32 | | | |
| | 기타 | 3 | 276.67 | | 사별>이혼 별거>미혼 별거>유배우 | |
| | 합계 | 10451 | 226.06 | | | |
| | 미혼 | 40 | 722.3 | | | |
| | 유배우(기혼) | 6476 | 1001.68 | | | |
| 전체 | 사별(기혼) | 3568 | 756 | 22,238 | 유배우>사별 | |
| 소득 | 이혼(기혼) | 277 | 760.65 | *** | 유배우>이혼 | |
| | 별거(기혼) | 87 | 1005.54 | - | | |
| | 기타 | 3 | 1233.33 | - | | |
| | 합계 학력 | 10451 N | 910.45 평균 | t/F값 | 사후검증 | |
| | | | | | Scheffe | |
| | 무학(글자모름) | 1088 | 193.898 | - | 무학<중졸 | |
| | 무학(글자해독) | 2381 | 191.668 | 1 | 무학<고졸 | |
| 고파 | 초등학교 주하고 | 3468 | 223.895 | 407.050 | 무학<대학졸 | |
| 공적 소득 | 중학교 고등학교 | 1340 | 291.918 | 427.258 *** | 무학<대학교이상 | |
| _= | 과등역교 대학(4년미만) | 1503 108 | 468.862 1014.14 | 1 | 초졸<중졸 | |
| | 대학(4년미년) | 563 | 1323.04 | 1 | 초졸<고졸 초졸<대학졸 | |
| | 합계 | 10451 | 324.759 | + | 조율<대약을 초졸<대학교이상 | |
| | 무학(글자모름) | 10451 | 123.987 | | 무학<초졸 | |
| 1121 | 무학(글자해독) | 2381 | 180.638 | 92 200 | 무학<중졸 | |
| 시장 소득 | 초등학교 | 3468 | 305.709 | 82.308 *** | 무학<고졸 무학<대학졸 | |
| | 중학교 | 1340 | 460.928 | | 무학<대학교이상 초졸<중졸 | |
| | | | | 1 | I | |

| | 고등학교 | 1503 | 532.719 | | | |
|----|----------|-------|---------|---------|------------|--|
| | 대학(4년미만) | 108 | 695.361 | | 초졸<고졸 | |
| | 대학교이상 | 563 | 946.432 | | 초졸<대학졸 | |
| | 합계 | 10451 | 349.388 | | | |
| | 무학(글자모름) | 1088 | 229.37 | | | |
| | 무학(글자해독) | 2381 | 239.56 | | | |
| | 초등학교 | 3468 | 223.26 | | | |
| 가족 | 중학교 | 1340 | 206.57 | 3.481 | | |
| 소득 | 고등학교 | 1503 | 217.86 | ** | 중학교<무학 | |
| | 대학(4년미만) | 108 | 283.33 |] | | |
| | 대학교이상 | 563 | 237.17 | | | |
| | 합계 | 10451 | 226.06 | | | |
| | 무학(글자모름) | 1088 | 552.54 | | 무학<중졸 | |
| | 무학(글자해독) | 2381 | 618.14 | | 무학<고졸 | |
| | 초등학교 | 3468 | 759.85 | | 무학<대학졸 | |
| 전체 | 중학교 | 1340 | 975.79 | 325.885 | 무학<대학교이상 | |
| 소득 | 고등학교 | 1503 | 1231.39 | *** | 초졸<중졸 | |
| | 대학(4년미만) | 108 | 2016 | | 초졸<고졸 | |
| | 대학교이상 | 563 | 2541.57 |] | 조졸<대학졸 | |
| | 합계 | 10451 | 910.45 | | 초졸<대학교이상 | |

2. 노인소득원별 불평등

[표 3]과 같이 전체소득으로 노인의 소득 10분위를 구분하고 소득분포와 지니계수를 확인하였다. 전체소 득 지니계수는 0.4809로 나타났으며 공적소득 지니계수 0.4701, 시장소득 지니계수 0.6735, 가족소득 지니계수 0.1855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전체소득에 대한 불평 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적소득도 유 사한 불평등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소득은 지니계수가 매우 커서 소득분위별 불평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소득은 소득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소득 집단별 불평등 정도는 전체소득, 공적소득, 시장소득의 영역에서 모두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인전 체에 대한 절대적인 노인소득보장과 노인 간 상대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적소득보장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소득은 1분위가 111천원인 반 면, 10분위는 3,423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공적소득 도 1분위가 54천원인 반면 10분위는 1,35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소득도 1분위가 4.8천원인 반면 10 분위는 1,730천원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가족소득은 1분위 52천원, 10분위 254천원으로 차이는 있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서 큰 차이는 아니었다.

| ₩ | 3 | 누인 | 소득분위별 | 소드라 | 지L | 계4 | ^ |
|---|---|----|-------|-----|----|----|---|
| | | | | | | | |

| | <u> </u> | | 그리 시니기 | | |
|----------|----------|-----------|-----------|---------|----------|
| 전체: | 소득구간 | 공적소득 | 시장소득 | 가족소득 | 전체소득 |
| 1 | 평균 | 54.0983 | 4.8101 | 52.63 | 111.84 |
| 분위 | N | 1048 | 1048 | 1048 | 1048 |
| 프퓌 | 표준편차 | 51.74355 | 18.31245 | 39.998 | 45.286 |
| | 평균 | 92.8135 | 15.8639 | 120.02 | 229.14 |
| 2 분위 | N | 1051 | 1051 | 1051 | 1051 |
| 프퓌 | 표준편차 | 54.98351 | 40.83597 | 56.624 | 31.832 |
| | 평균 | 128.9293 | 39.1958 | 169.78 | 338.51 |
| 3 분위 | N | 1047 | 1047 | 1047 | 1047 |
| 프퓌 | 표준편차 | 88.72343 | 74.12925 | 93.916 | 30.320 |
| | 평균 | 173.6110 | 54.4618 | 207.28 | 437.70 |
| 4 분위 | N | 1059 | 1059 | 1059 | 1059 |
| 군귀 | 표준편차 | 125.42603 | 95.53969 | _ | 28.796 |
| 5 | 평균 | 225.8574 | 78.0273 | 224.18 | 530.85 |
| 5 분위 | N | 1024 | 1024 | 1024 | 1024 |
| 군귀 | 표준편차 | 164.57095 | 123.49789 | 158.392 | 28.536 |
| _ | 평균 | 238.5635 | 116.5024 | 283.81 | 639.91 |
| 6 분위 | N | 1047 | 1047 | 1047 | 1047 |
| 프퓌 | 표준편차 | 179.37938 | 161.80349 | 190.892 | 37.250 |
| 7 | 평균 | 239.4154 | 215.5875 | 334.89 | 793.69 |
| 7 분위 | N | 1040 | 1040 | 1040 | 1040 |
| 군귀 | 표준편차 | 202.61015 | 240.34573 | 242.281 | 55.781 |
| | 평균 | 277.2275 | 444.3279 | 330.87 | 1060.25 |
| 8 분위 | N | 1046 | 1046 | 1046 | 1046 |
| 군귀 | 표준편차 | 260.23046 | 367.08942 | 316.386 | 102.515 |
| 0 | 평균 | 445.1023 | 798.4761 | 293.16 | 1549.35 |
| 9 분위 | Ν | 1046 | 1046 | 1046 | 1046 |
| 군귀 | 표준편차 | 479.15640 | 570.46682 | 403.169 | 202.131 |
| 10 | 평균 | 1376.1965 | 1730.5523 | 245.72 | 3423.23 |
| 10 분위 | N | 1043 | 1043 | 1043 | 1043 |
| 군귀 | 표준편차 | 1357.9317 | 2337.9063 | 484.177 | 2180.083 |
| | 평균 | 324.7594 | 349.3881 | 226.06 | 910.45 |
| 전체 | N | 10451 | 10451 | 10451 | 10451 |
| | 표준편차 | 599.88738 | 932.75398 | 268.791 | 1158.551 |
| 지 | 니계수 | 0.4710 | 0.6735 | 0.1855 | 0.4809 |

아래 [그림 2]의 소득원별 분포를 보면 가족소득을 제외하고 전체소득, 시장소득, 공적소득에 있어서 소득 분위가 높은 10분위에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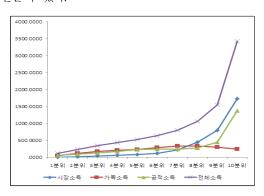


그림 2. 소득원별 소득분포

3.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노인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 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를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4809였으며, 공적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 는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노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소득불평 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지니계수 변화가 거의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 계수보다 매우 커지는 가족소득의 경우 노인 간 소득불 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시장소득 의 경우 제외한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져서 시장소득이 노인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4.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 표 가, 그런 그그런이 그그럴 00에 비지는 표되 | | | | | | |
|-----------------------------|--------|---------|---------|---------|---------|--|
| 전체소득구간 | | 전체 | 전체소득- | 전체소득- | 전체소득- | |
| Lix | 2-11-2 | | 공적소득 | 가족소득 | 시장소득 | |
| 1 | 평균 | 111.84 | 57.74 | 59.21 | 107.03 | |
| 분위 | 표준편차 | 45.29 | 43.74 | 51.41 | 46.08 | |
| 2 | 평균 | 229.14 | 136.33 | 109.12 | 213.28 | |
| 분위 | 표준편차 | 31.83 | 58.41 | 55.97 | 48.80 | |
| 3 | 평균 | 338.51 | 209.58 | 168.74 | 299.32 | |
| 분위 | 표준편차 | 30.32 | 87.71 | 98.14 | 76.13 | |
| 4 | 평균 | 437.70 | 264.09 | 230.42 | 383.24 | |
| 분위 | 표준편차 | 28.80 | 125.17 | 131.77 | 97.24 | |
| 5 | 평균 | 530.85 | 304.99 | 306.67 | 452.82 | |
| 분위 | 표준편차 | 28.54 | 164.54 | 160.32 | 124.68 | |
| 6 | 평균 | 639.91 | 401.35 | 356.10 | 523.41 | |
| 분위 | 표준편차 | 37.25 | 183.30 | 189.51 | 163.23 | |
| 7 | 평균 | 793.69 | 554.28 | 458.80 | 578.10 | |
| 분위 | 표준편차 | 55.78 | 204.80 | 250.07 | 236.99 | |
| 8 | 평균 | 1060.25 | 783.03 | 729.38 | 615.93 | |
| 분위 | 표준편차 | 102.52 | 276.72 | 335.70 | 352.04 | |
| 9 | 평균 | 1549.35 | 1104.25 | 1256.19 | 750.87 | |
| 분위 | 표준편차 | 202.13 | 495.04 | 461.73 | 548.11 | |
| 10 | 평균 | 3423.23 | 2047.04 | 3177.51 | 1692.68 | |
| 분위 | 표준편차 | 2180.08 | 2371.54 | 2240.52 | 1420.27 | |
| 하게 | 평균 | 910.45 | 585.69 | 684.38 | 561.06 | |
| 합계 | 표준편차 | 1158.55 | 966.51 | 1162.72 | 656.72 | |
| Х | 니계수 | 0.4809 | 0.4864 | 0.5784 | 0.3609 | |
| | | | | | | |

[그림 3]의 그래프를 통하여 전체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제외한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소득을 제외한 경우에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적소득을 제외 한 경우는 전체소득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장소득은 노 인소득불평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가 족소득은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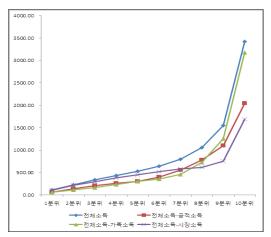


그림 3. 소득원 변화에 따른 분포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인소득원을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으로 분류하여 노인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소득원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공적소득·시장소득·전체소득은 남성이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여성노인이 많아서 남성들이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소득활동도 많이 하는 반면 가족지원은 여성노인이 많이 받고 있었다. 노인가구도 여전히 남성중심의 소득활동이 수행되고 있어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이읍면에 비해 모든 소득원이 높아서 도시지역 노인일수록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할 뿐만아니라 가족지원도 많이 받고 있었다. 노인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노인이 시장소득·전체소득은 높은 반면 에 공적소득·가족소득은 적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이 총소득도 높은 반면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공적제도의 혜택과 가족지원을 많이 받고 있 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저 연령 노인들이 공적소득·시 장소득·전체소득이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낮아서 저 연 령 노인들이 공적혜택이 많았으며 경제활동도 많이 하 고 있지만 가족지원은 적게 받고 있었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전체소득·시장소득·공적소득은 유배우자인 노인이 사별·이혼한 노인보다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유배우자 노인보다는 사별·별거한 노인이 많아서 배우 자가 있는 노인이 공적제도에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경 제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사별·별거한 노인 은 가족지원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소득·공적소득·시장소득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가족소득은 큰 차이가 없었다. 고 소득 노인들이 공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소득구조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세 대 이전에 높은 수입을 얻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노인 이 된 이후에도 높은 공적소득과 시장소득을 통하여 윤 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소득계층별 개별 소득원의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소득 10분위를 구분하고 개별 소득원의 지니계수를 산정하였다. 전체소득 지니계수는 0.4809, 공적소득 지니계수는 0.4701,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6735, 가족소득 지니계수는 0.1855로 나타나서 노인 전체소득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소득은 지니계수가 가장 높아서 소득계층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제도에 의한 공적소득지원도 지니계수가 높아서 불평등이 심각한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족소득은 지니계수가 작아서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소득계층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 전체소득, 공적소득, 가족소득의 순이다. 특히 공적소득 조차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끝으로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공적소득 제외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 제외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 제외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 지니계수에 비해서 해당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니계수가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지니계수 변화가 미미하여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매우 적었다.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는 크게 낮아져서 시장소득이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제외한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지는 가족소득의 경우 노인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소득불평등을 완화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노인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인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괜찮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일자리 정책 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고소득층 노인들만이 괜찮을 일자리를 지속 하는 현재의 노인 경제활동 형태를 저소득층 노인들도 적정 시장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들의 금융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도 예컨대 노인들에 대한 금융교 육을 통해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시장수입을 얻 을 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등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불평등 초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이 국 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 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재 분배 기능이 강한 조세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령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공 적소득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노인소 득의 불평등을 소득원 구분에 의거하여 수행한 측면에 서 의의가 있지만 노인소득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에 대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노인소득원에 대한 합의를 위한 후속연구와 함께 이에 의거한 시계열적인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소득의 불평등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 헌

- [1] 정경희, *2011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11.
- [2] 김진욱,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 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제13권, 제1호, pp.111-127, 2011.
- [3] 엄소영, 이용재, "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 -가족분담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5권, 제2호, pp.191-199, 2015.
- [4] Clayton, Richard, and Jonas Pontusson, "Welfare– State Retrenchment Revisited: Entitlement Cuts,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Inegalitarian Trend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World Politics, Vol.51, No.1, pp.67–98, 1998.
- [5] 여유진, 송치호,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2010.
- [6] T. H. Marshall,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 London: Heinemann, 1963.
- [7] R. Titmuss, Essays on the Welfare State, George Allen & Unwin, 1976.
- [8] 최병호, 김태완,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3호, 2005.
- [9]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 의 효과*. 노동리뷰94, 2013.
- [10]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11]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12] Huber, Evelyne, and John Stephens,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13] Korpi, Walter, and Joakim Palme,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3, No.5, pp.661-687, 1998.
- [14] Burstein, Paul, "Bringing the Public Back In: Should Sociologists Consider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Social Forces, Vol.77, No.1, pp.27-62, 1998.
- [15] 김재호, 정주연,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 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2.
- [16]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 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 지조사연구, 제36권, pp.27-59, 2013.
- [17] 강성호, 임병인,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 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2009.
- [18] 손병돈,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 인분해,"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445-1461, 2009.
- [19] 이원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pp.163-188, 2012.

저 자 소 개

이 용 재(Yong-Jae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 지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보장,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